

의안 번호	1786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 토 보 고 서</p>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6. 30.(수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6. 30.(수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7. 9.(금)

2. 제안이유

-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며 일본어식 표현을 정비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변경 :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
→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
- 나. 포상금 지급대상자 규정 (안 제2조)
- 다. 포상금 지급기준 규정 (안 제4조)
- 라. 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 (안 제5조)
 - 본안소송 1건당 200천원 ⇒ 300천원
 - 소액사건, 신청사건 20천원 ⇒ 50천원
- 마. 구청장 표창 규정 (안 제6조)

4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 업무관련 실제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 확대는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하고 책임감과 자부심을 고취시켜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 촉진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근거법규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부칙 <제16057호, 2018. 12. 24.> (문화재보호법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5호다목 중 “지정·보존 및 관리”를 “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”로 한다.